

회원등록신청서 Sample { 전면 }

< 주의 >

본 양식은 기본적인 법정 기재사항만을 예시한 것으로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등 록 신 청 서

1. 신청인 기본정보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이메일 | | 주 소 | |

2. 신청인 계좌정보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

3. 후원인 정보

| | | | |
|------|--|------|--|
| 성 명 | | 회원번호 | |
| 생년월일 | | 휴대폰 | |

추천인 정보

| | | | |
|------|--|------|--|
| 성 명 | | 회원번호 | |
| 생년월일 | | 휴대폰 | |

후원인과 추천인 동일 (V)

- ※ 등록 신청서상 기재된 등록회원의 정보가 허위일 경우 회원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는 거래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회원등록신청서의 뒷면에 기재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회사입력란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자 : |
|-------|------------------------------|-------|

(주) 직 접 판 매 대표이사 000

회원등록신청서 Sample { 후면 }

다단계판매원 등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 시행규칙 제 15 조 참조]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주)직접판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 15 조 제 2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
6.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단계판매원 탈퇴 ➡ [법 제 22 조 참조]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주)직접판매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에 아무런 조건은 없습니다. 회사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원의 수첩을 회수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지사항 ➡ [법 제 23 조 및 제 24 조 참조]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때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3.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1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1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수치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1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 [법 제17조 및 제8조 참조]

1.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단,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정보가 미개재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청약철회의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 소비자 | 판매원 |
|------|--|---|
| 보상내용 |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 환급금액의 100% (대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 환급금액의 90% (대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회원등록신청서 Sample { 별지 }

< 주의 >

본 내용은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기본사항만을 예시한 것 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처리 위탁에 관하여 판매원들로부터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의 목적, 제공(위탁)하는 기관과 회사를 열거하고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예시)

| 수집 항목 | 이용 목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주문배송정보, 회원번호(ID,비밀번호 포함), 후원인 정보 -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 사진, 영상, 음성 기타 회사 제품 이용과 관련된 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청구서 전달, 민원 및 불만 해결을 위한 경로의 확보 - 주문결제처리, 계산서 발행, 물품배송 등 서비스 제공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 회원 관리 감독 및 지원 |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예시)

|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근거 법령 상세 기재 ex) - 상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 |
| * 각 회사별 규정 근거 마련하여 추가 | |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에 거부하실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직접판매공제조합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설정, 유지, 관리, 이행 등의 업무 처리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회원번호, 거래금액, 결제수단, 기타 위탁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정보 | 제공된 목적 달성시까지 |

* 회사별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항 추가 기재 (ex. 마케팅 거래업체, 상위판매원 제공 등)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에 거부하실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

(서명)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제공 내역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시)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주)**택배 | 물품배송 |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제공된 목적 달성시까지 |
| **평가정보 | 본인인증서비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제공된 목적 달성시까지 |

* 회사별 위탁하여 제공하는 사항 추가 기재 (물품배송업체, 회원관리시스템 유지 및 보수 업체 등)

2.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제공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에 거부하실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

(서명)